

의안번호	제947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7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의자 : 이상식, 오영탁,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의원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장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
-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지원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 의료격차 해소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의료격차”란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원, 접근성, 품질 및 건강결과 등에서 지역 간 발생하는 불균등 또는 차이를 말한다.
3.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
 - 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실태 및 의료 자원 분포 등을 평가·분석한 결과 필수의료분야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 내 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료조사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시·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감독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4.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 등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관련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

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

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장비·운영비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現)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 시설·운영비 등 지원사업

-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비 지원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응급의료취약지 내 응급실 운영기관)
-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확대사업(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지원
-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운영비	31,965,000	6,393,000	6,393,000	6,393,000	6,393,000	6,393,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등) 및 자체재원 매칭을 통한 지원
- 도비, 시군비 매칭을 통한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2,458,000	2,458,000	2,458,000	2,458,000	2,458,000	12,290,000
국비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1,283,000	1,283,000	1,283,000	1,283,000	1,283,000	6,415,000
국비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국비 (분만취약지 지원)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5,250,000
세 출		6,393,000	6,393,000	6,393,000	6,393,000	6,393,000	31,965,000
단양군보건의료원 지원 (도비50, 군비5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국비100)		1,283,000	1,283,000	1,283,000	1,283,000	1,283,000	6,415,000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도비40, 시군비6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국비50, 도비25, 군비25)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분만취약지 지원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500,000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도비1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재원 조달		6,393,000	6,393,000	6,393,000	6,393,000	6,393,000	31,965,000
의존 재원	소 계	2,458,000	2,458,000	2,458,000	2,458,000	2,458,000	12,290,000
	보조금	2,458,000	2,458,000	2,458,000	2,458,000	2,458,000	12,29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07,500	1,907,500	1,907,500	1,907,500	1,907,500	9,537,500
	지방세	1,907,500	1,907,500	1,907,500	1,907,500	1,907,500	9,53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2,027,500	2,027,500	2,027,500	2,027,500	2,027,500	10,137,500
기 타 (민간 자부담 등)							